

수
입
인
지

제 회 사모사채(기업용)

총액인수계약서

(실물발행용)

20 . . .

_____ (이하 “채무자”라 함)는(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사채 총액 인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한다.

제1조 (발행조건)

① “채무자”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제 _____ 회 _____ 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_____ 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_____ 원정
4.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금 _____ 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가액의 100%
6. 각 사채의 권면금액과 권중 : 금 _____ 원권 _____ 매
7.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 제6호의 금액 및 권중의 분할 및 병합은 금지한다.
8.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리금 상환일 전일까지

$$\text{총} (\quad) + (\quad) \% (\text{표면금리 연} \quad \%)$$
 (□ 고정 / □ 변동[변동주기 ()개월])

② 사채인수 및 대금 납입 관계사항

1. 사채인수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사채 대금 납입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사채 발행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③ 제1항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사채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 일물 CD유통수익률, AAA 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 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사채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가. 91 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 나. 6 개월물 금융채 또는 1 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

④ 제3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1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2조 (사채의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① 본 사채의 원금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고 원리금 상환일 이후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 ②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 ③ 이자 지급 및 계산방법(해당되는 “□”내에 “V”표시한다)

- 복리식
 - 기존금리 : _____ %
 - 복리기간 : _____ 개월 후취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 이표식
 - 기존금리 : _____ %
 - 이자지급시기 : _____ 개월
 - 선취
 - 후취
- 할인식
 - 기존금리 : _____ %
 - 이자지급시기 : 사채매입당시

5-06-0386(5-2) (2016.06. 개정)
 (보존기간:왕제일로부터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약관-82호(2016.04.11)

- ④ 이자를 계상함에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를 절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사채의 기한전 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약에 의하여 “은행”은 “채무자”에게 조건부 기한 전 매수, 매도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지연배상금)

-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 할 금액에 대하여 그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 지체일수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 1.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적용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 ()% 이내로 적용합니다.
 - 2. 연체기간별 가산율은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개월 초과인 경우 연 ()%를 적용합니다.

제4조 (사채권의 발행과 교부)

- ① “채무자”는 사채발행일에 사채권을 발행하여 사채인수일에 동 사채권을 “은행”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교부받은 사채권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사채 인수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채권의 발행과 인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5조 (사채권의 재교부)

- ① “은행”이 사채권을 상실한 경우 제권판결문 등본과 그 상실이유를 기재한 사채권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 ② “은행”이 사채권을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 그 사채권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없이 재교부 하기로 한다. 다만, 그 사채권이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6조 (사채권의 기재사항)

사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채권의 번호
- 2. 발행인 상호
- 3. 사채의 총액
- 4. 각 사채의 금액과 권중
- 5. 사채의 이율
- 6. 사채의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 7. 채권의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 8. 사채 발행일
- 9.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 10. 사채 지급 보증서

제7조 (사채원부 작성)

“채무자”는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하며 사채원부 사본을 “은행”에게 교부한다.

제8조 (사채권의 양도)

- ① “채무자”는 “은행”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채무자”와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제 10조 삭제
(인)

- ① “채무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은행”과의 계약상 채권보전을 위하여 은행등 금융기관이 그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을 “은행”에게 제공한다.
- ② 제1항의 약속어음의 보증기한은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본건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는 당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제1항 소정의 약속어음을 새로이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면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어음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그 보증기한은 당해 사채권의 지급 기일까지로 한다.

④ “채무자”는 사채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인 담보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무제표의 제출)

“채무자”는 매 결산일 후 2개월내에 그 영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하며 영업년도중이라도 “은행”의 청구가 있을시에는 “은행”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현재 시산표 등 “채무자”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한다.

제12조 (중요사항 통보의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은행”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의 정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변경
3. 영업목적의 변경
4. 재해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의 발생
5.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시
6. 타 회사에 피인수 또는 피합병시
7.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 재평가 착수보고와 재평가 신고시
8. “채무자”의 자본금의 5%이상을 타법인에 출자시
9. “채무자”의 자본금의 20%이상의 차입 또는 기재시
10.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13조 (약정의 변경 등)

- ① “은행”은 채권의 보전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이 약정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채무자”와 “은행”간에 상호협의를 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4조 (약정의 위반 등)

- ① “채무자”가 이 약정서에 약정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 또는 침해된 이익에 대하여 위약 손해금을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약손해금은 위약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잔여일수에 위약손해금률(연___%)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기본약관의 준용)

사채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채무등 사채인수 관련채무가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조의 대상거래에 포함되기로 하며, 이 약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담보),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제12조(어음의 제시, 교부), 제15조(위험부담, 면책조항), 제18조(통지의 효력), 제19조(회보와 조사), 제21조(이행장소, 준거법), 제22조(약관, 부속약관 변경),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하기로 한다.

제16조 (기타특약사항)

	(채무자)	(인)
--	-------	-----

년 월 일

(채무자) _____ (인)

(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연대보증인) _____ (인)

(연대보증인) _____ (인)

(은행)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채무자)	(인)
---	-------	-----